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30

나. 제안자 : 유천호 · 이근학 · 정종섭 · 오홍철 · 윤지상 외 3인

다. 회부일자 : 2009. 12. 01

라. 상정일자 : 2009. 12. 17(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유천호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단서조항인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하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한기간 중에도 조례를 제·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 제1항의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조항 삭제부분과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유천호 의원 등 5인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09년 12월 1일 회부됨.

주요 내용

-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아니 한다).

- 먼저 조례 제·개정 경위를 보면

본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09년 2월 5일 제정된 것으로,

- **제정 당시** 기초자치단체의 수당지급 상황이 불균형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적용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상위법¹⁾에서도 동일한 급여와 수당 등의 중복지급을 배제하고 선택적 또는 공제차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에서도 중복지급을 제한함.
- 그러나 '09년 10월 5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자로 하여 조례를 개정함. 개정 당시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 하는 별개의 수당으로 해석하여 그 대상자를 확대·개정함.

- 그동안 조례의 제·개정 경위에서 보듯이 수당의 중복지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법제처·행정안전부·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당의 중복지급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²⁾은 시·도와 군·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군·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은 수당 또는 예우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일반적인 조례 입법 사례³⁾를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가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조례입법의 원칙인 형평성·통일성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시와 군·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안 부칙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함.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2)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로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⁴⁾하여 개정함.

◆ 참전명예수당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비	: 10,800백만원
○ 지급대상	: 18,000명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지급액	: 월 5만원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현황

구.군명	조례명	제(개)정일	지급금액 (월 기준)	최초지급시기	비고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08.12.31	월3만원	2009.1월부터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08.12.30	월3만원	2009.1월부터	
옹진군	옹진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09. 3.12	월3만원	2009.4월부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인천시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시가 5만원을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 할 수 있는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운용센터-2193(2009. 10. 23) 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법규운용 안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급 기준은?
- 65세미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답 변 >

- 유천호 의원,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군·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할 사항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급은 법률로 정하고 있음
 - 대상은 7,000여명 정도이며, 현재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비용부담도 크므로 지속 검토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나. 반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중 “2010년 7월 1일부터” 를 “공포한 날부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 단서 삭제 ></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인천광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이 조례는 <u>2010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인천광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 <u>공포한 날부터</u> ----- --.</p>